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06월 20일, 이인선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0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11.26.)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12.26.) 상정 ·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2.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9.)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인선의원)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므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4. 06. 05.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 및 체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희석)

1. 제정안의 개관

각 제정안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성원의원안은 총 8장, 33개의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이인선의원안은 총 7장 30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김성원의원안의 경우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률의 목적, 정의규정,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제2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구성, 업무 등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입지선정과 철도망·도로망 등 다른 기간시설과의 공동개발 검토,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중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제도와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제5장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취득·사용과 이에 따른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다루고 있음.

제7장은 보칙으로서 정보공개, 권리·의무의 승계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8장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인선의원안의 경우 제1장 및 제2장의 구성은 김성원의원안과 매우 유사하나, 제3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제4장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지선정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및 개발행위 특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5장은 개발사업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6장은 보칙으로서 정보공개, 권리·의무의 승계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두 법안은 장 구성 및 조문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므로, 국가 전력망 구축 현황에 따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뒤 각 제정안

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차이점으로는 ①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력망 설비의 범위,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 및 하부조직의 구성, ③ 개발행위의 특례 적용 여부, ④ 선하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특례 적용 여부 등이 있음.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가. 국가 전력망 구축 현황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발전설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 지연과 전력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동해안 지역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강릉안인 1·2호기, 삼척 블루파워 1·2호기)와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나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이 지연되면서 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¹⁾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성²⁾ 중이고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서 수도권에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송·변전설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투자계획에 따르면 총투자비는 56조 7,000억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초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송·변전설비는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과 전력수급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 갈등³⁾이 발생할 수 있고,

전자과 발생·경관 훼손 등의 우려로 지역사회의 수용성도 매우 낮아 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의 반발⁴⁾이 심하여 송·변전설비 구축 사업

2) 2027년부터 반도체 Fab 9개와 협력사 200여개가 입주하는 산단이 조성되며 2050년까지 약 10GW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임.

3) 수혜지와 경과지뿐만 아니라 경과지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절차 초반부터 지연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 전반적인 전력망 확충도 상당히 지연⁵⁾되고 있음.

[표] 주요 전력망 사업 지연 현황(10차 기준)

구분	전체	정상진행	지연	준공지연사유			
				민원	인허가	시공여건	고객사유
건수	31건	19건	12건	5건	4건	2건	1건

구분	설비명	준공목표	지연사유	현재공정
송전선로 (11)	북당진-고덕 2단계	'23.06	시공여건(변환소 준공지연)	가압대기
	동해안-신가평	'25.06	-	시공
	동해안-수도권#2	'26.06	-	입지선정
	동두천C/C-양주	'24.12	인허가(국방부, 행안부 협의지연)	시공
	갈산-신광명	'23.07	-	준공
	북당진-신탕정	'24.12	-	시공
	고덕#2-서안성	'23.02	-	준공
	당진T/P-신송산	'25.12	민원(당진시 비협조)	사업신청
	신장성-신정읍	'29.12	-	입지선정
	신정읍-신계룡	'29.12	-	입지선정
	동제주-완도	'23.12	-	시공
변전·변환소 (20)	신강원	'26.10	-	입지선정
	북당진C/S, 고덕C/S(2단계)	'23.06	시공여건(휴전지연)	시험준비중
	동해안#1C/S, 신가평C/S	'25.06	-	설계
	동해안#2C/S, 수도권#2C/S	'26.06	-	계약준비
	신부평BTB 1단계	'23.06	민원(부평구 비협조)	설계, 인허가
	신부평BTB 2단계	'30.04	-	착수준비
	신송산	'23.12	고객사유(고객 휴전 비협조)	휴전대기
	신시화	'23.06	-	시공
	신장성	'26.06	민원(장성군 비협조)	설계

4) 지자체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송·변전설비 구축이 지연된 사례는 [참고자료 1] 참조

5)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사업 28건 중 약 40%인 11건 지연

구 분	설비명	준공목표	지연사유	현재공정
	신강서	'27.12	-	착수준비
	고덕#2	'22.10		준 공
	신송도	'26.09	민원(시흥시 비협조)	용지매수
	신정읍	'26.12	-	용지매수
	신청주	'24.10	인허가(부지인수 지연)	시 공 중
	신성연	'25.10	인허가(용도변경 지연)	실시설계
	신달성	'25.06	인허가(환경부 협의지연)	사업신청
	신광적	'28.10	-	부지선정
	신목감	'27.12	-	부지확정
	신기흥	'26.12	-	설 계
	신장수	'26.10	-	용지매수

자료 : 한국전력공사

예를 들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500kV)는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을 시작하였는데 현재 당초 계획 대비 6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전력망 건설을 직접 주도하지 않고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송·변전설비 전반을 책임지는 체계하에서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지역의 전력 과잉생산이나 수도권 전력수급 부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려면 정부가 주요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과 같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국가 주도로 중요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망 관련 의사결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의무화하고 도로·철도 등 국토계획과 공동건설을 추진하는 등 주민수용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⁶⁾하였음.

예컨대, EU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건설을 환경규제 등 타 공익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로 판단하여 주요 전력망 건설에 대해서는 환경규제를 대폭 간소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고,

미국은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제정하여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을 선정하고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강제승인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도 중임.

6) 구체적인 해외 송전망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사례는 [참고자료 2] 참조

[표] 해외 주요국 국가 전력망 관련 제도개선 사례

구 분		내 용
특 례 법	 (독일)	○ EnLAG('09) :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 명시, 인허가 최소화 및 분쟁절차 간소화
	 (미국)	○ NABEG('11) : 주(州)간 건설법을 연방법으로 통일, 보상체계 강화 ○ 인프라법('21) : DOE의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 선정, FERC 강제승인 기준 개선
참 여	 (독일)	○ 송전망 계획단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의무화
	 (미국)	○ 송전망 계획·승인 전 과정 이해관계자 참여, 진행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보 상	 (독일)	○ 8주 이내에 토지보상 합의한 경우 간소화 보상금 추가 지급(75% 수준)
	 (네덜란드)	○ 6주 이내에 토지보상 합의한 경우 간소화 보상금 지급(20% 수준)
지 중 화	 (독일)	○ 국가 필수 송전망 사업 대상 주거지와의 근접성 등 특정 요건 만족시 지중화
	 (덴마크)	○ 기존 송전망의 점진적 지중화 및 신규 송전망의 지중화 의무화 가이드라인 제정
공 동 건 설	 (미국)	○ NextGen 사업 : 미네소타주 고속도로, 통신망·HVDC 공동 연계
	 (프랑스)	○ SOO Green HVDC 사업 : 아이오와~일리노이주 철도, HVDC 연계 ○ Piedmont-Savoy HVDC 사업 : 프랑스-이탈리아 고속도로, HVDC 연계

자료 : 한국전력공사

나. 종합적 검토

각 제정안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주요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 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②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특례를 적용하며, ③ 국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보상·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임.

현재 전력망 구축 사업은 대부분 「전원개발촉진법」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정안은 전원설비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같은 무탄소 전원에 연계하거나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용량·장거리 전력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보아 이에 한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지 않고 규율 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타당성이 인정되고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영향평가 간소화, 토지등 사용에 관한 특례, 선하지 보상 특례 등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각 제정안의 입법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전원개발촉진법」은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②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인·허가 의제를 적용하며, ③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8) 참고로,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간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은 개정된 법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임.

3. 개별 검토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범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정의와 관련하여 김성원의원안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34만 5천볼트(345kV)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규정하는 반면, 이인선의원안은 같은 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변전설비 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345kV)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정의하여 보다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표] 정의(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변전설비 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3. · 4. (생략)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3. · 4. (생략)

「전기사업법」 제25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항 각호에서 기본방향, 장기전망과 같은 필수적인 포함 사항을 나열⁹⁾하고 있음.

9)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사용 전압이 34만 5천볼트 이상인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 설비 중에서도 국가 에너지 수급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설비의 확충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송·변전설비에 한정하여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 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핵심 송·변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정의하면 법적용 대상이 구체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 ⑨ (생략)

나. 전력망위원회 및 하부조직 구성

김성원의원안은 ①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1인으로 하여 2인 위원장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② 당연직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열거하며, ③ 전력망위원회의 사업심의, 분쟁 조정 등 업무 지원을 위해 하부조직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반면,

이인선의원안은 ①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여 1인 위원장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② 당연직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③ 전력망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사전 검토 등 업무 지원을 위해 하부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표] 전력망위원회 및 하부조직 구성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u>위원장 2명</u> 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u>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 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u> 이 된다. ②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u>위원장 1명</u> 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원장은 국무총리</u> 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u>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u>의 장,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u>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각자 대표한다.	1. 당연직위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u><삭 제></u>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⑤ <u>위원장 모두가</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전력망위원회는 <u>사업심의, 분쟁조정, 기술자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⑧ <u>그 밖에 전력망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위원장이</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u>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장 수와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단일 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경우 법령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출신 위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공동 위원장 체제를 구성하기도 함.

[표] 공동 위원장 체제 위원회 구성 입법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⑥ (생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생 략)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역사·문화·도시계획·토지이용·건축·환경·교통·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김성원의원안은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행정각부의 협업 및 업무조정 역할을 맡도록 하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촉위원 출신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반면, 이인선의원안은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을 1인으로 하여 관련 인허가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 간 업무조정이 용이하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에 국무총리 외에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둘지 여부는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는 취지와 위원회의 주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선의원안과 같이 국무총리를 단독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일관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기보다는 에너지 위원회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은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②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두 제정안은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데, 국회에서도 전력망위원회 위원 구성에 참여할 경우 전력망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강화하여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촉위원의 수를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정수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다.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허가 의제

김성원·이인선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허가 의제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7.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	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9.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0.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9.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2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2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3.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4.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2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11조제3항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2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3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3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3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3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3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9조제3항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청취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청취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각 호에 따른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전원개발촉진법」의 인·허가 의제 사항은 1979년에 제정된 후 추가된 적이 없는데, 각 제정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법률의 제·개정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해진 16개 개별법률에서 다루는 인허가의 신규 의제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며, 의제 사항은 동일함.

[표] 특별법 신규 인·허가 의제 사항(「전원개발촉진법」 기준)

-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정안의 목적이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이므로 개발사업 실시계획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정 인·허가에 대해서는 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는 없는 새로운 인·허가등을 발굴하여 인·허가 의제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두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나 관할 지자체 사이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러한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제정안 제8조~제12조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자료 요구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자료 요구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지선정시 대통령령으	②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지선정시 대통령령으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송·변전설비는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에 따라 구축이 필요한 각각의 송·변전설비에 대해서 한전이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지역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¹⁰⁾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전력망과 유사한 국가 핵심 사회기반시설인 철도나 도로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입지선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도¹¹⁾하고 있으나, 송·변전설비의 입지선정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이 주도하고 있어 이해관계 조정, 지자체 협조 등에 대한 실행력이 약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 조정이나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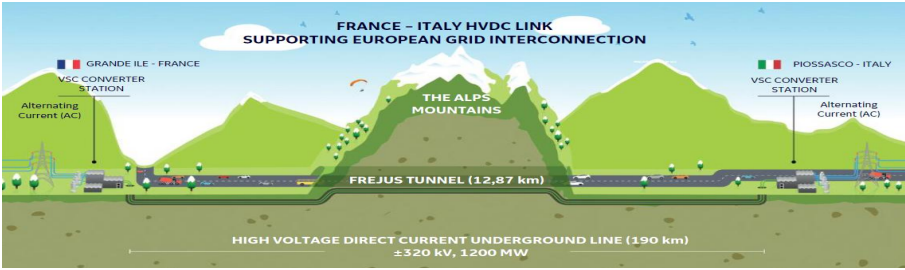
따라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구축할 때 「전원개발촉진법」의 입지선정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서 주민 반대나 지자체 갈등으로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면 이를 정부 차원에서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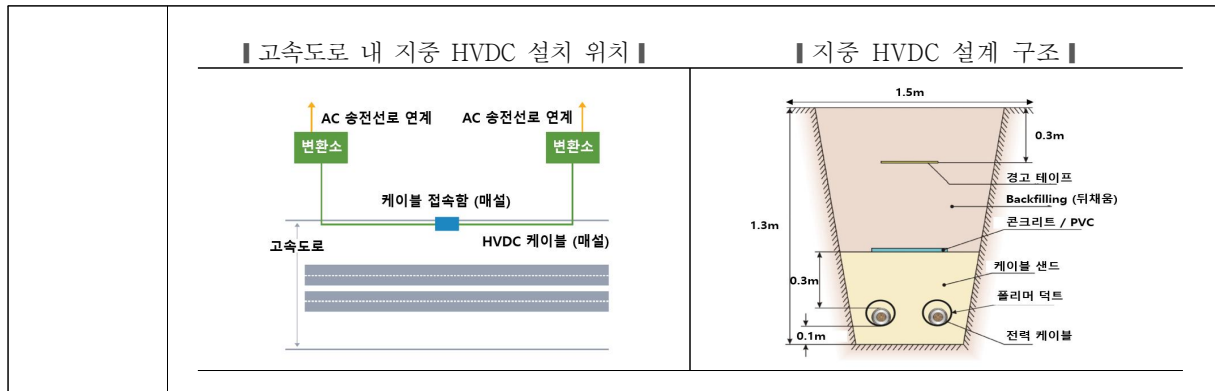
10) 2024년 1월 19일부터 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19552호)이 시행되면서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11) 도로의 경우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철도의 경우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직접 수립함.

②공동개발과 관련하여, 전력망을 도로와 같은 선형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토지의 취득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을 축소하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서는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를 건설할 때 도로 부지를 활용하여 지중에 송전망을 설치한 사례가 있음.

[표] 해외 주요국 송전망 공동개발 사례

국 가 명	주요내용
프랑스-이탈리아	○사업명 : Piedmont-Savoy HVDC Interconnection(건설기간 '16~'20) ○목 적 : 프랑스-이탈리아간 전력연계로 시장효율 향상 ○내 용 : 송전망 건설민원, 환경영향 등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66km 고속도로, 18km 일반도로 등)하여 지중경과지 구성 
미 국	○자 료 : NextGen Highways Feasibility Study for the Minnesota Department Transportation('22.4) ○목 적 : 고속도로 부지를 활용한 송전망, 통신망의 효과적 건설 ○내 용 : 고속도로 갓길에 지중관로를 매설하여 지중HVDC, 광케이블 설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설비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두 제정안과 같이 전력망과 다른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할 방법을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인선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기관에게 공동개발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개발이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행위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부처가 참여하는 전력망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마. 개발행위의 특례

이인선의원안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구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의 설치, 작업장, 진입로 등의 사용구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에 대한 협의·승인·인가·허가(이하 "개발행위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지연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개발행위인허가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표] 개발행위의 특례

이인선의원안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의 설치, 작업장, 진입로 등의 사용구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에 대한 협의·승인·인가·허가등(이하 이 장에서 "개발행위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행위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장(이하 이 장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발행위인허가등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인선의원안

④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회신기간 내에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개발행위인허가등의 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주요 송·변전설비 구축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¹²⁾을 받거나 일부 지중 송전선로와 같은 특수한 경우 「도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같이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별도로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울진군에서 산업단지
지에 대한 전력공급 방안 마련 필요 등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

1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사안은 지역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의제되도록 하는 인허가 의제 사항에 포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포함되는 인허가 의제 외에도 시공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나 진입로 공사를 위한 일시사용과 같은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인선의원안은 국기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인·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면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간주 규정을 두어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지연으로 인한 개발사업 부진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다만,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신속 처리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인허가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한 인허가권자의 법적인 권한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인허가 등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규정하지 않고 대상인 “건축물의 설치, 작업장, 진입로 등의 사용구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에 대한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각 호에서 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인허가를 개별법과 함께 명시하고 그 외에 성질상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일부 특수 개발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선하지 등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특례

이인선의원안은 실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송전선로가 지상 또는 지하에 지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게 송전선로 설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표] 선하지 등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특례

이인선의원안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인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방법,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1항13)에 따르면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13) 「전기사업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공간에 송전선로가 설치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송전사업자는 현재 한전뿐이므로 송전선로 선하지(線下地) 등에 대한 보상은 한전이 실시해야 함.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지상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와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을 위한 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5]에서도 토지의 이용 저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사용¹⁴⁾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사업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보상은 송전선로 구축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금전 보상으로 보이며 토지 매수청구를 규정하는 조문은 없음.

그리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송전선로 인근의 주택에 대한 매수청구를 규정¹⁵⁾하고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

구분	사용기간	보상금액 산정기준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한시적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평가가액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하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있으나 선하지 등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선하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전선로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해당 토지 자체를 송전사업자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그런데, 지상이나 지하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경우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경관 훼손, 투자 가치 하락, 전자파로 인한 영향 우려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사용	
----	--

1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垓)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력망의 핵심이 되는 송·변전설비는 국가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구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사적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면 국가가 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청구권은 현행법의 손실보상이상을 지급하는 시혜적인 제도로써 한전 재무적 부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매수 청구 시 매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재산권에 대한 제약 수준, 경관 침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 미공개 정보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두 제정안은 보안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미공개정보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31조(벌칙)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제29조(벌칙)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벌과 더불어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전력망 설비 구축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김성원의원안은 미공개정보 활용, 제공 및 누출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¹⁶⁾에서 벌금액의 상

16) 김성원의원안은 구체적으로 ①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는 경우, ② 이익 또는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③ 이익 또는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있음.

한을 정하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문 규정에 따라 벌금액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유사 입법례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 상한액 등 보충적인 내용을 단서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표] 미공개정보 활용 등에 대한 처벌 입법례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시개발법」

제79조의2(벌칙) ①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2.17.)에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